

##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7. 6. ~ 7. 13.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233호
----------	--------

○ 발의연월일 : 2020. 7. 2.

○ 발의자 : 이영란, 김미애, 이복남,  
장숙희, 김미연, 박혜정  
의원

##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방안(2018. 11.)」 권고내용 반영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등

## 2. 주요내용

- 조례의 이념성, 방향성을 나타내는 “민간위탁 촉진” 을 삭제하고 관리에 중점을 둔 제명 반영(조례 명칭 변경)
- 위탁사무, 재위탁, 재계약 등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적정성 검토사항 명시(제4조, 제5조)
- 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명시(제6조, 제7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명시(제8조, 제9조)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계약체결, 재계약에 관한 사항 명시(제14조, 제15조, 제16조)
- 수탁기관의 의무, 사무편람 비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8조, 제19조, 제20조)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감사, 성과평가,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기간 내 제23조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제8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순천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6.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재계약)** 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사무의 목적, 내용 및 정해진 조건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위탁사무의 내용 또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탁사무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장은 위탁사무의 인계, 중단, 폐지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

구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감사)**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년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를 실시한다.

**제24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수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자유형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순

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⑰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⑱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박혜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250호
----------	--------

발의연월일 : 2020. 7. 2.

박혜정, 박재원,  
최병배, 정홍준,

발 의 자 : 이현재, 김미애,  
장숙희, 문규준  
이복남 의원

##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의회회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안 제2조)
- 시장의 조치 (안 제3조)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3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7. 2.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재무회계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완료(2020년 6월 1일 공포)
-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라 동 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례 일괄개정

## 2. 주요내용

- (대상 조례)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조례 등 18개 조례 (붙임)
- (변경 내용) 준용조문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괄 변경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 의견조회 기간 : 2020. 6. 11.(목) ~ 6. 15.(월)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기획예산실-83664(2020. 6. 22.)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붙임]****재무회계규칙 준용조례 목록**

연번	부서명	조례명	비고
1	회계과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2	투자일자리과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	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노인장애인과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5	사회복지과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사회복지과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7	토지정보과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8	도시과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9	건축과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	
10	건축과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11	건축과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12	건축과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3	농업정책과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14	농업정책과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5	농식품유통과	순천시 남도농특산물관 관리·운영 조례	
16	기술보급과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17	기술보급과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18	보건위생과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37조 제2호의 고지서에 의한”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로 한다.

제1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6조(「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7조(「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조(「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9조(「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0조(「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1조(「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2조(「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3조(「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4조(「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의” 를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로 한다.

제15조(「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6조(「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제2호에 따른 고지서에 따라” 를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로 한다.

제17조(「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납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 <u>순천시 재무회계규칙</u> 」 제37조 제2호의 고지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①-----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u>을 준용하여</u> ----- -----.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u>순천시재무회계규칙</u> ,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준용규정)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

###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 <u>순천시재무회계규칙</u>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② -----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 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익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 ②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 <u>순천시 재무회계규칙</u>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제7조(수익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 ② ----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현 행	개 정 안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 ----- --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순천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제8조의2(원인자부담) ----- ----- -----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 ----- ----- ----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순천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 <u>순천시재무회계규칙</u> 」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7조(준용) ----- -----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 <u>순천시재무회계규칙</u> 」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준용) ----- -----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 <u>순천시 재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u>순천시재무회계규칙</u>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준용) -----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준용규정)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 <u>순천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규정) ②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 <u>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 및 「 <u>순천시 재무회계 규칙</u>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급단가) ② 대금의 납부는 「 <u>순천시 재무회계 규칙</u> 」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한다.	제8조(공급단가) ②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준용하고 -----.

○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기금의 출납은 <u>순천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③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용료 납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는 「 <u>순천시 재무회계 규칙</u> 」 제37조제2호에 따른 고지서에 따라 사용전일까지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납부)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준용한다.

○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 <u>순천시 재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분석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분석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징수절차는 <u>순천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 ② ----- ----- 「 <u>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3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7. 2.

## 1. 제안이유

- 당초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현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는 헌혈장려 및 헌혈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혈액관리법」 제4조의 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신설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마일리지)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사후관리, 헌혈자원봉사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협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3조)
- 수당의 지급, 홍보, 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에 관한사항(안 제14조 ~ 제16조)

## 3. 제 정 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의 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6. 1. ~ 6. 22.)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5. 27. (여성가족과-1070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5. 2. (건강증진과-6410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5. 20. (기획예산실-690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6. 1. (순천시보건소 공고 제2020-5호)

#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와 시민의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시민의 인식 고취와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및 헌혈 활동 포인트(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2. 순천시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순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적십자혈액원, 위생단체 등 관련 임직원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대표 등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는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현열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현열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현열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현열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현열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현열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헌혈자원봉사자 활동 수당 지원
- 헌혈자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마일리지) 지급
- 헌혈추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등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320,000	-10,000	-70,000	-80,000	-80,000	-80,000
세입(a)						
세출(b)	320,000	10,000	70,000	80,000	80,000	8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320,000	10,000	70,000	80,000	80,000	80,000
국 비						
도 비						
시 비	320,000	10,000	70,000	80,000	80,000	80,000



#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3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7. 2.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인위원 구성을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 조문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조문 개정(안 제5조, 안 제7조)
- 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6조)
  - (공공분야) 기존 9가지 용도에 한정→원칙적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사용 가능
    - \* 사용 불가 :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 미반영 사항
  - (민간분야) 사유시설의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사용 가능
    - \* 재난관련법령에 따른 지구 내, 주소 불분명 등 요건 전부 충족 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구성 확대(1/3이상→ 1/2이상)(안 제9조)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10조)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6. 16. ~ 6. 2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6. 16.(여성가족과-1213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6. 15.(기획예산실-802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6. 6. 16.(순천시 공고 제2020-1317호)

#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른” 을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순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순천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을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0인”을 “12인”으로 하고,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난재해업무 담당 과장”을 “재난재해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금의 결산” 다음에 “, 기금의 결산, 민간 분야 기금 지원”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p> <p>① ~ ③ (생략)</p> <p>④ <u>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른</u> 대출 금액의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 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u> ----- ----- -----.</p>
<p>제6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법 제3조 가목이나 나목 영 제7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u></p> <p>1. <u>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의 및 안전 시설 설치</u></p> <p>2. <u>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u></p> <p>3. <u>재난예방 홍보물 제작</u></p> <p>4. <u>재난관련 장비 구입</u></p>	<p>제6조(기금의 용도) <u>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순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u></p> <p>가. 「<u>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p> <p>나. 「<u>자연재해대책법</u>」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p>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외한다.

2. 순천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 「행정집행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재난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재난재해업무 담당 과장

2. ~ 3. (생략)

④ ~ ⑦ (생략)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삽입>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12인

----- 2분의 1 -----

③ -----

1. 재난재해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

-----, 민간 분야 기금 지원 -----

#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3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7. 2.

## 1. 개정이유

-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 ※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의거 정비

## 2. 주요내용

- “미연에” 를 “미리” 로 변경 (안 제2조제6항)
  -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생략(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6. 10.(여성가족과-977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6. 15.(기획예산실-1013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미연에” 를 “미리” 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u>미연에</u>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 ----- ----- ----- <u>미리</u> ----- -----.</p>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3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7. 2.

##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및 개선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 (안 제19조)
  - 보전관리지역 (현행 : 5천㎡미만 → 개정 : 1만5천㎡미만)
  - 생산관리지역 (현행 : 1만㎡미만 → 개정 : 1만5천㎡미만)
-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안 제20조의3)
  -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입지 제한
  - 10호 이상 인가로부터 1,000m 이내 입지제한
  - 2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로부터 500m 이내 입지제한

### 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축규모 정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안 별표4)
  - 현행 : 18층 이하
  - 개정 : 층수제한 폐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용적률 변경 (안 제58조)
  - 현행 : 250%이하
  - 개정 : 250%이하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20%이하 적용)
- 상업지역내 건축물 허용용도 정비 (안 별표7, 안 별표8, 안 별표9)
  - 현행 : 상업지역내 공동주택(100%) 건축가능
  - 개정 :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공동주택(상업기능 10%)에 한하여 건축허용

○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용적률 완화 (안 제58조)

- 현행 : 50%이하 → 개정 : 60%이하

○ 경관지구 내 건축물 규모제한 완화 (안 제38조)

- 현행 : 건축물 길이 30m 미만, 연면적 1,500㎡미만 건축제한
- 개정 : 건축물 길이 30m 미만 건축제한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안 개선**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30조, 안 제57조의3, 안 별표22)

○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6조의2)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관련규정을 부시장(현행)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개정)으로 개정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 총2건 (관련부서 의견 2건)**

연번	제출부서	제출의견	비고
1	건축과	-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주거용도 비율에 포함토록 규정 - 상업지역내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미수용
2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관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적용 배제	미수용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2020. 4. 7. ~ 4. 27.

○ 의견제출 : 2건 (관련부서의견 2건 - 미수용)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3. 20.(기획예산실-457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20.(여성가족과-850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4. 7.(순천시공고 제2020-734호)
- 규제개혁 심의필 : 2020. 6. 22.(기획예산실-8424호)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5천제곱미터 미만” 을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만제곱미터 미만” 을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② 자원순환관련시설(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나. 2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23호 및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8조 중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를 “한다” 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제57조의3제2항을 제57조의3으로 한다.

제57조의3(중전의 제57조의3제2항) 중 “법 제77조제4항제2호” 를 “영 제84조의2 제2항” 으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 까지” 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250퍼센트 이하” 를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50퍼센트 이하” 를 “60퍼센트 이하” 로, 같은 항 제21호 중 “50퍼센트 이하” 를 “6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위원회” 를 “도시계획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시장” 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열람하는 방법으로” 를 삭제한다.

별표 4 전단의 “※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를 삭제한다.

별표 7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8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9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별표 22 다목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를 “ 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거나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보전관리지역 : <u>5천제곱미터 미만</u></p> <p>2. 생산관리지역 : <u>1만제곱미터 미만</u></p> <p>3.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 ----- -----.</p> <p>1. ----- : <u>1만5천제곱미터 미만</u></p> <p>2. ----- : <u>1만5천제곱미터 미만</u></p> <p>3. ~ 4. (현행과 같음)</p> <p><u>제20조의 3(자원순환관련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① 자원순환관련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u></p> <p><u>② 자원순환관련시설(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u></p> <p><u>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p> <p><u>2.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2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u></p> <p><u>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u></p>

현행	개정안
<p>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lt;제17816호, 2002.12.26&gt;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2. (생략)</p> <p><u>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u></p> <p><u>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u>  <u>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u></p> <p><u>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u>  <u>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u>  <u>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u>  <u>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검사장을 제외한다)</u>  <u>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u>  <u>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u>  <u>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u></p>	<p><u>한다.</u></p> <p>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  -----  -----</p> <p>--.</p> <p>1.~2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현행	개정안
<p>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u>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u>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  ----- 한다. -----  -----  -----  -----  -----.</p>
<p>제57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u>① 영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8년 12월 31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u></p> <p><u>②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p>	<p>제57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u>&lt;삭제&gt;</u></p> <p><u>&lt;삭제&gt; 영 제84조의2제2항</u>-----  -----  -----  -----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p>

현행	개정안
<p>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 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4. 제2종일반주거지역 : <u>250퍼센트 이하</u></p> <p>5. ~ 16. (생략)</p> <p>17. 보전관리지역 : <u>50퍼센트 이하</u></p> <p>18. ~ 20. (생략)</p> <p>21. 자연환경보전지역 : <u>50퍼센트 이하</u></p> <p>② ~ ⑧ (생략)</p> <p>제66조의2(공동위원회) ① (생략)</p> <p>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하로 하며, <u>위원회의</u> 위원중에서 3분의 2 미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p> <p>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시장</u>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생략)</p> <p>제70조(회의록) ① (생략)</p> <p>②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의 공개는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u>열람하는 방법</u>으로 공개한</p>	<p>----- -----.</p> <p>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5. ~ 16. (현행과 같음)</p> <p>17. ----- : <u>60퍼센트 이하</u></p> <p>18. ~ 20. (현행과 같음)</p> <p>21. ----- : <u>60퍼센트 이하</u></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제66조의2(공동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도시계획위원회</u> ----- -----.</p> <p>③ ----- <u>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0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lt;삭제&gt;</u> -----</p>



현행	개정안
<p>[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아.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u>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u></p> <p>[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p>
<p>[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u>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u> 라. ~ 거. (생략)</p>	<p>[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u>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u> 라. ~ 거. (현행과 같음)</p>

#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3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7. 2.

## 1. 개정이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시설물 단위 부담금 인상과 지역별 부담금 차등부과 도입 및 부과방식 개선
-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난발생 시 경감규정 신설

## 2. 주요내용

- 의무휴무 및 자율휴무 실시 일수에 따른 부담금 경감규정 신설(안 제2조제16호)
  - 경감비율 : (신설)매월 2일 5%, 매월 3일 8%, 매월 4일 이상 10%
- 교통유발정도가 낮은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면제항목 신설(안 제3조)
  - 면제대상 : (신설)읍면지역 2천제곱미터 이하 시설물
-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 인상(안 별표 3)
  - 인상금액 : (개정)연면적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 50원씩 인상하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2021년 700원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 100원씩 인상
- 경감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항)
  -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부과대상지역 중 일부 및 전 지역에 대해 100분의 30 이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2020. 3. 31. ~ 4. 20. / 2020. 6. 1. ~ 6. 21.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3. 23.(여성가족과-6344호) / 2020. 6. 8.(여성가족과-1150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2020. 6. 22.(기획예산실-8424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3. 13.(기획예산실-3910호) / 2020. 5. 28.(기획예산실-721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31.(순천시 공고 제2020-639호) / 2020. 6. 1. (순천시 공고 제2020-1167호)

# 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의무휴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8호, 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배전 시설
2.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
3.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4. 아파트 단지 내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상가
5.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단, 읍·면지역 내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 등에 준하는 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지구에 위치한 시설물 등 특별히 교통유발 정도가 큰 시설물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제4조 중 “다음 각호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부과대상지역 중 일부 및 전 지역에 대해 100분의 30

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항에 따른 경감률을 우선 적용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감축방안별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감축방안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li> <li>• 단, 토요일과 공휴일 및 31일은 적용 제외</li> <li>•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li> <li>※ 종사자 수 200명 이상인 시설물에 한해서 종사자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경감비율의 2분의 1을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li> </ul>												
승용차 5부제 (요일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li> <li>•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해당 요일에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padding: 2px;">요일</th> <th style="padding: 2px;">월</th> <th style="padding: 2px;">화</th> <th style="padding: 2px;">수</th> <th style="padding: 2px;">목</th> <th style="padding: 2px;">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끝 번호</td> <td style="padding: 2px;">1, 6</td> <td style="padding: 2px;">2, 7</td> <td style="padding: 2px;">3, 8</td> <td style="padding: 2px;">4, 9</td> <td style="padding: 2px;">5, 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li> <li>※ 종사자 수 200명 이상인 시설물에 한해서 종사자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경감비율의 2분의 1을 적용</li> </ul>	요일	월	화	수	목	금	끝 번호	1, 6	2, 7	3, 8	4, 9	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5</li> <li>※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li> </ul>
요일	월	화	수	목	금									
끝 번호	1, 6	2, 7	3, 8	4, 9	5, 0									
승용차 2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li> <li>•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li> <li>※ 종사자 수 200명 이상인 시설물에 한해서 종사자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경감비율의 2분의 1을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li> <li>※ 다만, 105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li> </ul>												

감축방안	이행기준	경감비율
주차장 유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70이상 징수</li> <li>※ 다만, 기업체, 단체 등의 소유차량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1시간이내 무료주차 미 인정)</li>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1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 시, 다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3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시)</li> </ul>
승용차 함께 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 (10대 이상 20대 미만)</li>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 (20대 이상 30대 미만)</li>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4 (30대 이상 40대 미만)</li>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40대 이상)</li> </ul>
시차출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 100분의 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li> <li>※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예외 (9시 정상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체,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li> </ul>
통근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 제공</li> <li>※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 비율과 합산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퇴근 운영 시 : <math>\{(총\ 이용\ 좌석\ 수 \div 총\ 종사자\ 수) \div 2\} \times 100</math></li> <li>•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 시 : <math>\{(총\ 이용\ 좌석\ 수 \div 총\ 종사자\ 수) \div 4\} \times 100</math></li> <li>•단, 최대 30%까지 경감</li> </ul>

감축방안	이행기준	경감비율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사자의 50%이상에게 월 30회분 이상의 시내버스 승차권 등 지급</li> <li>※ 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li> </ul>
자전거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사자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종사자가 100인 이하 경우 최소 5인 이상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이상 20%미만)</li>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종사자: 20%이상 30%미만)</li>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이상 20%미만)</li> </ul>
의무휴무 또는 자율휴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휴무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정기적인 휴무</li> <li>•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li> <li>•의무휴무와 자율휴무는 합산 가능하며, 매월 2일 이상 휴무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매월 2일 시행 시)</li>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8 (매월 3일 시행 시)</li> <li>•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매월 4일 이상 시행 시)</li> </ul>



[별지 제2호 서식]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

시설 개 요	명 칭		면 적 ( m <sup>2</sup> )	
	주 소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종사자)	
신 청 경 감 륜		총 %		
산 출 기 초		구 분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 5부제		%
		승용차 2부제		%
		주차장 유료화		%
		승용차 함께 타기		%
		시차 출근제		%
		통근버스 운영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
		의무휴무 또는 자율휴무		%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
				%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직위(직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 개 요	명 칭		면 적 ( m <sup>2</sup> )	
	주 소		대 표 자	
	주 차 장 규 모	평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일상근무자 (종사자)	
신 청 경 감 률		총 %		
산 출 기 초		구 분	신청사항	결정사항
		승용차 10부제	%	%
		승용차 5부제	%	%
		승용차 2부제	%	%
		주차장 유료화	%	%
		승용차 함께 타기	%	%
		시차 출근제	%	%
		통근버스 운영	%	%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	%
		의무휴무 및 자율휴무	%	%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	%
			%	%

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

[별표 3]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500원	550원	600원	65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5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20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21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22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3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50원)]×교통유발계수
	2024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20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21년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22년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23년	[1천86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4년 이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5.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15. (현행과 같음)</p> <p><u>16. “의무휴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u>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아파트 단지 내 상가(3,000제곱미터 미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8호, 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배전 시설</u></p> <p><u>2.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u></p> <p><u>3.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u></p> <p><u>4. 아파트 단지 내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상가</u></p> <p><u>5.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종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단, 읍·면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 등에 준하는 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지구에 위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u></p> <p><u>6.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u></p>
<p>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단위부</p>	<p>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 -----</p>

현 행	개 정 안
<p>담금은 <u>다음 각호와 같다.</u></p> <p>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④ (생략)  <u>&lt;신 설&gt;</u></p>	<p>----- <u>별표 3과</u> -----.</p> <p>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u>부과대상지역 중 일부 및 전 지역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u> 이 경우 이 항에 따른 경감률을 우선 적용한다.</p>



현행			개정안		
감축방안	이행기준	경감비율	감축방안	이행기준	경감비율
<u>승용차 요일제</u>	·(생략)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시차 출근제	·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종사자의 50% 이상 출근시간 조정 · 다만, 오전 06:00이전 또는 정오(12:00)이후 교대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신설>	·1시간차이마다 교통 유발부담금 의 100분의 5	시차 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50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 · <삭제> ※ 시설물 업무 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예외 (9시 정상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체,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 등)	·삭제 ----- -----
<신설>	<신설>	<신설>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의무휴무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한 정기적인 휴무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 ·의무휴무와 자율휴무는 합산 가능하며, 매월 2일 이상 휴무 시행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매월 2일 시행 시) ·교통유발부담금 의 100분의 8 (매월 3일 시행 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매월 4일 이상 시행 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감축 방안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 승차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	감축 방안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 30회 ----- -----
	<신설>	<신설>		의무휴무 및 자율휴무	·의무 휴무일 수 : ·자율 휴무일 수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산출기초		
			구 분		
			의무휴무 및 자율휴무		·%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산출기초		
			구 분		신청 사항
			의무휴무 및 자율휴무		%
					결정 사항
					%

#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4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7. 2.

### 1. 개정이유

-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대상을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여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변경(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확대(안 제3조제1항)
  - 2006년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
  - 순천시에 연속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축소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6. 1. ~ 6.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5. 27.(여성가족과-1074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5. 28.(기획예산실-720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6. 1.(순천시 공고 제2020-1140호)

#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의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 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로,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①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u></p> <p>1. <u>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u></p> <p>2. <u>&lt;삭제 2018. 12. 26.&gt;</u></p> <p>3. <u>순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u></p> <p>2. <u>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u></p> <p>3. <u>법 제2조제13호 나목에 규정된 건설기계</u></p>	<p>제3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① <u>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로,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lt;삭제&gt;</u></p> <p style="text-align: right;"><u>&lt;삭제&gt;</u></p> <p>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lt;삭제&gt;</u></p>

#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4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7. 2.

## 1. 개정이유

-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정비

## 2. 주요내용

- 손해배상 관련 조분 정비(안 제14조제2항)
  - “모든 책임을 진다”를 “책임을 질 수 있다”로 개정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민법」 제750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5. 1. ~ 5.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13.(여성가족과-816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4. 9.(기획예산실-513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4. 21.(순천시 공고 제2020-868호)

#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모든 책임을 진다” 를 “책임을 질 수 있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생략)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u>모든 책임을 진다.</u> ③ (생략)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책임을 질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4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7. 2.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에 맞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존속기한)신설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5. 1. ~ 5.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20.(여성가족과-849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4. 17.(기획예산실-553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4. 21.(순천시 공고 제2020-867호)

#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u>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4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7. 2.

## 1. 제정이유

- (행사준비 및 조직 운영) 국제정원박람회 행·재정적 지원 사항 법제화
- (출연금 지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근거 마련
- (사후활용) 박람회 이후 정원문화와 산업의 육성·발전 지원 조직 전환

##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4조) 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목적, 법인의 설립·운영, 사업 등
- (안 제5조 ~ 제8조) 조직위원회 재산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재산, 출연금 등의 지원, 수익사업, 공유재산의 사용 등
- (안 제9조 ~ 제14조) 조직위원회 결산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보고·검사, 파견, 행·재정적 지원, 잔여재산 귀속, 권한위탁 등

## 3. 제 정 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민법」 제31조 ~ 제9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7호

## 5.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5. 29. ~ 6. 18.)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5. 21.(여성가족과-10353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0. 5. 27.(기획예산실-7172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0. 5. 29.(순천시 공고 제2020-1158호)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구와 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자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사업
6. 박람회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7. 박람회 연관사업 조정
8. 박람회 관련 국제기구(국제원예생산자협회),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9.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순천시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 등의 출연금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휘장관련 사업
3. 임대사업
4. 협찬사업
5. 시설유치 사업
6.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청산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